

산소치료 처방전
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발급			
수진자 (진료받은 사람)	건강보험증 번호	성명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	
진료과목			
상병	상병명	상병코드	
산소처방 지시사항 (1일에)	안정 시	L/분	시간
	운동 시	L/분	시간
	취침 시	L/분	시간
동맥혈 가스검사 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소분압(PaO ₂)이 55mmHg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소포화도(SaO ₂)가 88%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소분압(PaO ₂)이 56~59mmHg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소포화도(SaO ₂)가 89%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55% 초과) <input type="checkbox"/>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<input type="checkbox"/> 폐동맥고혈압		
산소포화도 검사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소포화도가 89%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55% 초과) <input type="checkbox"/>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<input type="checkbox"/> 폐동맥고혈압		
호흡기장애 정도	1. 심한 정도 2. 심하지 않은 정도		
처방전 사용기간	발급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		
산소치료 처방기간	. . . ~ . . . 까지		

년 월 일

요양기관 명칭

(요양기관 직인)

요양기관 기호

담당의사

(서명 또는 인)

면허번호 제

호

전문과목

전문의 자격번호

유의사항

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3.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·결핵과·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.
4.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5.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"재발급"에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6.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7.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, 서비스 내용,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.
8. 2019.7.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